#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박충권·김정재·엄태영

김승수 • 이인선 • 조정훈

김성원 · 김태호 · 박준태

백종헌 • 박성훈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 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2)
2030년 12월 31일
2000 년 12 년 01 년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